



**총회**

Distr... 일반

2023년 8월 29

일

영어만 가능

---

**인권 이사회**

54번째 세션

2023년 9월 11일 ~ 10월 6일

안건 항목 3

개발권을 포함한 모든 인권, 시민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의 증진 및 보호

**파비안 살비올리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  
관의 대한민국 방문 보고서**

국가별 의견\*



---

\* 본 문서는 공식적인 편집 없이 발행되고 있습니다.

#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 의견서

## 1. 소개

1. 대한민국 정부는 2022년 6월 방한 기간 동안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보고관과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에 자행된 심각한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틀을 채택하고 진실규명 및 추모 절차를 수립하는 데 진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인정해 주신 특별보고관에게 감사드립니다.
3. 2022년 5월에 출범한 현 정부는 보편적 가치와 규범을 중시하며 진실, 정의, 배상, 재발 방지 보장 등 인권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엔 특별절차를 비롯한 인권 메커니즘과 긴밀히 협력하여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4. 대한민국 정부는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신 특별보고관에게 감사드리며, 보고서 초안에 언급된 사안들에 대한 우리 정부의 견해와 추가 정보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 2.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조치

### A.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 가입

5. 대한민국 정부는 2023년 1월 유엔의 핵심 국제 인권 협약 중 하나인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CED)'에 가입했습니다.

### B. 고문에 대한 정의를 포함하도록 형법 개정

6. 현행법상 모든 형태의 고문 및 잔인한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력 및 가혹행위)는 헌법상 고문받지 않을 권리(제12조 제2항)를 보장하기 위해 특별히 범죄 구성요건에 폭력 및 가혹행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특히 수사기관에서 공무원이 행한 폭력, 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인권침해를 처벌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폭력"이란 "신체에 대한 물리력의 행사"를 의미하며, 반드시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의 행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잔인한 행위"는 폭력 이외의 수단을 통해 심리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 C.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요청

7.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 사건 피해자의 재심을 위한 사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422조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로 자행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법률을 제정하고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정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고 진실화해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정리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위 법률의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권*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8. 특히 제주4월3사건과 관련해서는 '*제주4월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으로 약칭)이 2021년 2월 26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재심특례 사유에 재심신청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식 판결이 없더라도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4·3위원회가 법무부장관에게 *직권* 재심신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이 관련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 위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21년 11월 광주고등검찰청에 '제주 4-3사건 직권 재심 권고 합동단'을 설치했습니다. 합동단속반은 2023년 2월부터 5월 17일까지 군사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941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신청했고, 821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2022년 8월 10일 군사법원 유죄 판결자뿐만 아니라 특별법에 명시되지 않은 일반법원 유죄 판결자에 대해서도 재심을 실시해 직권재심 청구 대상 수형자의 범위를 확대했고, 이후 2023년 5월 11일까지 일반법원 유죄 판결자 20명에 대해 직권재심을 신청해 수형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구제를 위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0. 정부는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왔으며, 과거 주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직권재심*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5월 17일 기준 / 단위: 명).

카테고리	기타(탈퇴/해지)			합계
	무죄 판결	보류 중		
진실과 화해 위원회	30			30
긴급 조치 위반	217	1		218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178	4	4(탈퇴) 및 1(해고)	187
부마 민주항쟁 관련 인시던트	6		3(해고)	9
1972년 계엄법 위반	119		1(출금)	120
4월 3일 <sup>rd</sup> 제주 사건	821	120		941
북한에 납치되었다가 귀환한 어부들	15			15
<b>합계</b>	1,386	125	9	1,520

11. 특히 대검찰청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기소가 유예된 사람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021년 2월에는 군 검찰 또는 검찰이 피고인의 혐의 시인을 이유로 기소를 유예한 사건에 대해 쟁점이 된 행위를 '민주화운동을 방어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해 '무죄'로 처분을 변경했다.

헌정질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 14일 기준 총 86명에 대한 처분을 변경하고, 유죄 판결을 받은 총 18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12. 2023년 5월 16일, 대검찰청은 1968년 동해에서 조업 중 납치되었다가 귀환 후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100명의 '납북 및 귀환 여부'에 대한 불법 구금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관할권을 가진 전국 5개 검찰청에 직권재심 신청 절차를 개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납북 및 귀순 어민에 대한 직권 재심을 통해 총 15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D. 중대한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사, 기소 및 제재를 보장하기 위한 책임 프로세스 또는 기소 전략 수립

13. 정부는 국가보안법상 범죄수사 또는 정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고소 또는 위증을 하거나 국가보안법상 범죄에 관한 증거를 위조·인멸·은닉하는 경우 국가보안법상 특별처벌을 규정하여 국가기관의 보안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방해한 군인, 검사 또는 경찰관을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여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적극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적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위 조항을 적극 적용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부과할 것입니다.

#### E. 불법 행위 청구에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 입증 책임의 전환을 구현하기 위한 법률 또는 기타 조치 채택

14.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은 물론 모든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소송에서 손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것은 로마법 이래 국내외 민법의 대원칙입니다. 사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당사자가 그 존재를 입증하는 대신 사실과 관련성이 낮은 당사자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모든 국가배상 사건에 대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과거 인권침해 민사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보고서가 유력한 증거로 활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F. 정의를 위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15.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집단학살범죄', '반인도범죄', '전쟁범죄' 등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및 형의 선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16.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되어 13세 미만의 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강간 등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거나 그 적용을 연장 또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7. 2015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람을 살해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제기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었습니다.



18. 2020년 7월에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재심 사유를 규정하는 '반인도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2022년 11월에는 반인도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반인도범죄의 공소시효 배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발의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 **G. 과거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 배상에 대한 장기 소멸시효 규정 삭제**

19. 헌법재판소는 2018년 8월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장기소멸시효(객관적 제척기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대법원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정하여 관련 재판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중대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장기소멸시효로 인해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배상청구 소송에 관여하는 관련 정부기관이 위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결정을 존중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H. 과거 인권 침해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위한 조치**

20.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경우 기준이 부족하여 법원의 배상 판결이 있더라도 사건마다 인정되는 배상액이 달랐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과거 인권침해 사건의 판례를 조사·분석하여 적정 배상액 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8년 1월 과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이른바 '패스트트랙' 절차가 제정되었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이 '패스트 트랙' 절차에서 정한 적정한 배상 범위 내에 있는 경우 국가는 배상액에 대해 항소할 수 없으며, 피해자가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조기에 판결을 확정합니다.

## **I. 법률 지원**

21.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는 소득기준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 산하기관)을 통해 법률구조법 등의 관련 조항에 따라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 및 국가배상 사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J.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활동**

22. 2017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과거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 또는 직권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해 '검찰 과거 인권침해 사건 특별위원회'가 활동했습니다.

23. 위원회의 심의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 사건 15건과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문제점 2건(범죄혐의 사실 공표, 선임계 제출 없는 변론)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24. 위원회는 대검찰청의 사실관계 조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다양한 관련 사건들을 포함하여 폭넓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및 재판 기록, 언론 보도 및 증언, 검사, 수사관 및 증인의 대면 인터뷰와 같은 자료입니다.

25. 위원회는 당초 6개월을 넘어 약 1년 반 동안 활동하며 앞서 언급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총 57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26.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사건 등 수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기소하는 등 위원회의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검찰총장에게 사과를 권고한 8개 사건(경찰 고문으로 사망한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를 전한 사건 등)에 대해 검찰총장이 사과의 뜻을 표명하고, 구금시설 내 인권침해 사건(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검찰이 확정판결에 대해 긴급항고를 신청하는 등 검찰의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사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검찰 중립성 확보를 위한 수사심의위원회, 항고 절차 개선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K. 인권 교육

27. 정부는 국가의 법질서 확립의 전제조건인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한 신뢰 제고를 기능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성과 적합성이 높은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습니다. 법무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인권의식을 함양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28. 검찰, 교정, 구금,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2박 3일간의 합숙을 통해 인권 의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현장 경험이 풍부한 직군별 내부 인권 강사들이 인권국이 자체 개발한 교재를 활용해 인권의 이해, 차별 극복, 인권 실천 방안 등을 주제로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29. 법무연수원은 사법-검찰 공무원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인권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지속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정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권 권고 사례를 중심으로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30. 검사 및 수사관을 대상으로 수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적 언행과 태도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한 1:1 맞춤형 일일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피의자 역할을 맡은 배우와 함께 피의자 모의 심문 장면을 영상으로 촬영한 후 커뮤니케이션 전문가가 피드백을 제공했습니다.

3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 중 위촉된 외부 인권강사가 기관을 방문하여 법무부 전 직렬 공무원 중 일선 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1일 교육을 실시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의 선진 인권의식을 법무행정 실무에 접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32. 법무부 인권조사과 소속 강사들이 법무연수원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인권 교육을 진

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횟수	교육생 수
2018	233	10,720
2019	252	11,819
2020	109	5,051
2021	159	7,017
2022	178	7,651
합계	925	42,258

## L. 인권 기록에 대한 액세스

33. 인권 기록의 확보는 사실 확인과 진실 규명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정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록을 관리·보존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계부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인권침해 관련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제출하고 있습니다.

34.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관련 정부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관계 기관에 진실 규명에 필요한 기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기록의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 3. 강제 동원

### 법률

35. 보상 관련 법령(당시 재무부가 담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권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66년 2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은 청구권기금의 일반적인 사항(민사 보상에 대한 일부 근거 포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일청구권 신고에 관한 법률은 1971년 1월 제정, 신고 대상은 강제동원 및 강제징용 피해자 중 사망했거나 재산을 보유한 자, 신고기간은 1971년 5월 21일부터 1972년 3월 20일까지(10개월), 접수기관은 전국 30개 세무서
- 대일 민사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은 1974년 12월에 제정되었으며, 보상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975년 7월 1일 - 1977년 6월 30일(2년); 지급 기관: 38개 금융기관 (위 보상법은 1982년 12월 국회에서 폐지되었습니다.)

36. 강제동원 피해자 조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특별법은 2004년 3월 5일에 제정되어 2010년 3

월 22일에 폐지되었습니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등 조사 위원회)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07년 12월 10일에 제정되어 2010년 3월 22일에 폐지되었습니다.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37. 일제강점하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010년 3월 22일 제정·시행되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 공식 사과

38. 일본은 1995년 무라야마 총리의 '제2차 세계대전 종전 50주년 담화'를 통해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해 아시아 지역 전체에 사죄와 반성을 표명했습니다.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는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일본이 한국에 대한 식민 지배에 대해 깊은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2023년 3월 16일과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비롯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 계승을 확인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5월 7일 한일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에서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당시 열악한 환경 속에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과 슬픔을 겪은 것에 대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습니다.

## 보상

39. 1975년부터 1977년까지 대일 민사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생명 및 신체 상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생명 보상금(강제 동원 사망자)은 1인당 30만 원입니다. 1974년 대간첩 작전 지원 중 사망한 향토예비군 보상금에 준하여 금액이 책정되었습니다. 재산보상금(예금, 보험, 채권 등): 신고 1건당 30원.

40. 2005년 민관합동위원회는 과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지 않았으며,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추가 지원을 해야 할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41. 2010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보상금, 미청구지원금, 의료비 등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상금(사망자 및 행방불명자)은 1인당 2천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일본이 다른 구 식민지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도의적 책임으로 지급한 보상금 수준과 다른 나라의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산정했습니다.

42.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일본은 군 복무 중 사망하거나 심각한 장애를 입은 대만 군인 한 명당 200만 엔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제2차 세계대전 중 억류된 일본계 미국인 생존자에게 1인당 2만 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상해 장애는 장애 정도에 따라 300만 원에서 2천만 원입니다. 미청구 지원금: 1엔을 2,000원으로 환산합니다. 의료 지원금: 연간 80만 원.

## 기념

43. 국가 강제동원 희생자 추념식은 강제동원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인식과 유족 및 국민의 참여를 통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며, 민족 화해와 사회 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44. 매년 역사박물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행사(2016년부터 7회)입니다.

- 위치 국립일제강제동원기념관 추모공원(부산광역시 남구 흥곡로 320번길 100, 부산광역시 남구)



- 시간: 매년 9월과 10월경, 13:00~15:00
- 하이라이트: 추도사, 헌화 및 분향, 추모 공연 등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45.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2004년 설립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위원회는 2005년 2월부터 3차에 걸쳐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1차 접수(2005년 2월 1일~6월 30일), 2차 접수(2005년 12월 1일), 3차 접수(2005년 12월 31일) 등 조사를 실시했다.

- 2006년 6월 30일), 3차(2008년 4월 1일~6월 30일) 총 피해 신고 접수 건수는 228,126건, 피해자를 찾은 건수는 218,639건(취하, 중복 신고, 판정 불가 등 발생)이었습니다.

## 4. "위안부" 피해자

46. 한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법률

4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은 1993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법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기념사업 등을 통한 명예회복, 진상규명 및 인권증진에 이바지한다.

### 공식 사과

48. 1993년 고노 요헤이 일본 관방장관은 일본군이 위안소의 설립과 운영, 위안부 이송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그는 많은 경우 위안부들이 회유, 강압 및 기타 수단을 통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되었으며, 행정/군 관계자가 모집에 직접 관여한 경우도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한편,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 보상

49. 대한민국 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생계와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은 2023년 현재 1,707,000원으로 지난해 1,626,000원보다 5% 인상되었으며, 1인당 월평균 돌봄비용은 289만 8,000원에서 올해 312만 6,000원으로 7.9% 증가했습니다.

다.

## 기념

50. 여성가족부는 2018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여성가족부는 국내외적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제고하고 시민사회에 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기념식을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피해자들을 기억하고 기리기 위해 2018년 국립망향의 동산에 처음으로 국가기념비를 설치했습니다.

## 기소 및 처벌

51.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잔혹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를 규명하는 것은 일본 제국주의 군대의 집단적 책임과 범죄를 저지른 일본 군인의 개인적 책임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52. 한국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1992년 1월 24일 외교부 주관으로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태스크포스팀이 구성되었습니다.

53. 2017년 여성가족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실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과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해 온 정치적 과정도 설명했습니다.

54. 일본군성노예제문제연구소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18년 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일본 정부 공식 문서, 국회 기록물 등 관련 자료의 수집, 번역, 분석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아카이브 814'(www.archive814.co.kr)를 운영하며 아카이브 자료의 보급을 통해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여성 인권 문제로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5. 한국전쟁 민간인 사상자

### 법률

5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식 사과

56.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사실 조사에 이어 위원회의 국가 사과 권고가 이행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모식을 거행할 때 대통령의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인근 지휘관이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국방부 장관의 서면 사과문을 낭독했습니다.

### 보상

57.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 기념

58. 지방자치단체는 유족회와 협력하여 추모식을 개최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추모제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희생자를 위한 추모공원은 현재 정부에서 조성 중입니다(행정안전부가 담당, 2024년 완공 예정).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59.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사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다수의 제보를 받아 현재 사실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 6. 국가 간 입양에서 입양인의 인권

### 법률

60. 정부는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에 따라 해외 아동을 입양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면서 국가 간 입양에 대해 공개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아동의 보호 및 국가 간 입양 의뢰에 관한 협력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가입했습니다. 정부는 협약 비준을 위해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가 간 입양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관련 국내법 도입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 공식 사과

61.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 간 입양인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국가가 보호하지 못하고 해외로 보낸 상황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04년 국제한국입양인협회 모임에 참석하여 진심 어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 보상

62. 시민권 취득에 실패하여 입양되지 못하거나 추방된 귀국 입양인을 위해 국립아동권리센터는 주거, 생활비, 치료, 교육, 사회적 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외 입양인 보호를 위한 종합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친가족 찾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념

63. 정부는 2005년 관련 법 개정에 따라 건전한 입양 문화 조성 및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5월 11일을 '입양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입양 가족을 초청하고 우수 유공자를 포상하는 등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 기소 및 처벌

64. 정부는 입양기관에 대한 연 2회 감사 및 점검을 통해 입양기관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입양기관이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정부는 입양특례법 및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합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65.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 권리 행사에 제약이 있는 입양인의 대략적인 수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입양원(현 중앙아동권리센터)은 2012년에 국외 입양인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국적 취득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입양인의 경우, 정부는 중앙아동권리위원회를 통해 입양인의 국적 취득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현지 관련 기관을 통해 시민권 취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제공합니다.

66. 또한, 정부는 감사-점검 기간 중 사전 통보 없이 입양기록을 누락하거나 파기한 것으로 확인된 입양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등 입양인의 입양기록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7. 북한에서 납치 및 귀환한 어부들

67. 북한에 의한 납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이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남북대화가 중단된 현 상황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북한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도록 계속 촉구해 나갈 것입니다.

### 법률

68.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에 따른 납북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에 3년 이상 납북되었다가 북한으로 송환된 납북자에게는 정착금과 주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3년 이상 억류되었다가 대한민국으로 송환된 납북자의 가족에게는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통일부 산하에 납북어업인 보상심의위원회와 지원단을 설치해 납북어업인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이 법은 어민들의 신변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임을 법제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식 사과

69. 아직까지 북한 당국의 공식적인 사과는 없었습니다.

### 보상

70. 정부는 어업인들에게 정착 및 주택자금 형태로 총 1,773백만 원을 보상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어업인들이 한국 사회에 사회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정부는 어업인 가정방문 상담, 방역물품 및 식료품 지원, 거주지 인근 의료시설 및 행정복지센터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맞춤형 생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기소 및 처벌

71. 납치를 자행한 주체가 북한 당국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특정하고 처벌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72. 정부는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장관급회담과 남북적십자회담을 통해 북한 당국에 납북자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정부는 2000년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부터 2018년 이산가족 상봉 행사까지 북한 내 납북자 소재를 파악하고 가족과 상봉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납북자 180명의 생사 여부를 문의했고, 북한 당국은 생존자 22명, 사망자 42명을 확인했다. 북한 당국은 납북자 116명의 생사 확인을 거부했다. 생존자 중 19명이 행사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73. 정부는 유엔 총회와 인권이사회, 국제적십자위원회 등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당국에 납북자들을 대한민국으로 송환할 것을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는 납북 피해자들이 유엔 강제적-비자발적 실종에 관한 실무그룹(WGEID)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현재까지 총 11건의 서한이 WGEID에 접수되었으며, 북한 당국은 57건의 서한에 대하여 문제가 정치적으로 조작된 것이며 WGEID의 인도주의적 임무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회신해 왔습니다.

## 8. 광주 항쟁(5.18 민주화 운동)

### 법률

74. 정부는 가해자 처벌, 피해자 배상, 피해자 명예회복, 진실규명 활동 참여 등 4가지 입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1995년 국회는 '*헌정질서 문란 범죄에 대한 공소제기에 관한 특별법*'과 '*5-18 민주화운동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광주항쟁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된 군 지도부를 기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75. 또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는 1990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서 희생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2000년 제정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희생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과 피해자의 의료·교육 서비스 및 취업 접근성 향상을 위한 비금전적 프로그램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법*'이 제정되어 광주항쟁 당시 군에 의한 심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있습니다.

### 공식 사과

76. 1987년 6월 10일 항쟁 이후 새 정부는 희생자와 그 가족들에게 여러 차례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한 희생자들의 공헌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77. 김영삼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식 기념식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위로하고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국방부도 2018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세 차례 공식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 보상

78. 정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 보험, 주택 융자, 교육 및 취업 지원과 같은 추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년	받은 사람 수 현금 보상	현금 보상 총액(백만 원)	1인당 현금 보상 (백만 원)
1990	2,219	142,171	64.0
1993	1,832	38,771	21.1
1998	464	27,456	59.1
2000	473	18,572	39.2
2004	109	4,827	44.2
2006	426	13,639	32.0
2015	284	5,683	20.0
합계	5,807	251,119	43.2

## 기념

79. 1997년 정부는 희생자들의 유해를 안치하기 위해 묘지를 조성했습니다. 2002년 5.18 국립묘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체포되어 고문을 당했던 당시 군부대 부지에는 '5.18 자유공원'이라는 이름의 추모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곳은 광주항쟁을 기억하기 위한 추모 장소입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 저항의 거점이었던 옛 도청 건물은 현재 정부 주도로 항쟁 당시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계엄군에 저항하다 숨진 시민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80. 항쟁의 첫날인 5월 18일은 1997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매년 5.18 국립묘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기념식에는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와 국회의원, 전국 각지에서 모인 많은 추모객이 참석합니다.

## 기소 및 처벌

81. 1994년 피해자와 유족, 활동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며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을 포함한 35명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담당한 서울지검은 1995년 7월 18일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로 35명 전원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82. 검찰의 결정은 국민들의 큰 저항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1995년 12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이 사건에 대한 전면 재수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수사를 마친 특별수사본부는 피해자들이 고발한 91명 중 16명만 기소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 적용된 범죄는 군사 쿠데타, 내란 등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범죄로 제한되었습니다. 그러나 살인, 납치, 고문, 학살, 강제실종 등 심각한 인권 침해와 반인도적 범죄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83.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에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의 국가에 대한 범죄는 심판되었지만, 광주시민을 상대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둘째, 수사와 기소가 일부 고위급 엘리트들에 국한되어 사건 현장에

---

서 잔혹한 군사작전을 수행한 중간급 장교들은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84. 2019년 정부가 설립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는 현재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군이 저지른 학살, 불법 기소, 암매장, 불법 구금, 고문 등 반인도적 범죄와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85. 사건 발생 38년 만인 2018년 3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6. 당초 조사위원회는 50명의 조사관으로 최대 3년 동안 조사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법이 개정되면서 조사관 수가 70명으로 늘어났고 조사 기간도 4년으로 연장되었습니다. 현재 위원회는 민간인에 대한 총기 난사, 집단 학살, 불법 체포, 고문, 비밀 암매장, 강제 실종, 군이 자행한 성폭력 등 21건의 진상 규명 과제를 진행하고 있다. 위원회는 2023년 12월 조사 활동을 완료한 후 공식 보고서를 청와대와 국회에 제출하고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위원회는 현재 전직 계엄군 2만여 명과 피해자 5천여 명으로부터 증언을 수집하고 각종 기록물 분석,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다.

87. 진실위 활동 이전에도 이미 다섯 차례의 진실규명 노력이 있었습니다. 1988년 7월부터 1989년 12월까지 국회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공청회 등 조사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1994년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울지방검찰청에 35명의 용의자를 고발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지만 가해자들을 기소하지 못한 채 마무리되었습니다.

88. 1995년 12월 김영삼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재개되었습니다. 검찰 수사는 가해자들을 형사 기소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 많은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고, 이후 진상규명 활동을 위한 상당한 양의 자료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의 수사로 광주에서 군이 저지른 잔혹행위의 전반적인 성격은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89. 2005년 8월, 국방부는 광주항쟁을 포함한 과거의 잘못을 조사하기 위해 임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위원회는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보다는 계엄군이 광주 외곽에서 시민들에게 발포하고 대량 학살을 자행한 정황만을 다루었습니다. 위원회는 2007년 7월 최종 보고서와 권고안을 채택했습니다.

90. 2017년 9월, 대통령 명령에 따라 국방부에 광주항쟁 당시 군의 헬기 사격과 공군 전투기의 폭격 계획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2018년 2월 공식 보고서를 채택하여 계엄군이 군용 헬기를 이용해 발포했고 전투기들이 무장하고 출격 대기 중이었던 것은 확인되었으나 광주를 겨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91. 2018년 8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이 5-18 당시 성폭행 사건에 대한 예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는 진실화해 위원회에 이첩되었습니다.

## 9. 제주 4·3 (4월 3일<sup>rd</sup>) 사건

### 법률

92.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4·3 특별법)은 2000년 1월 12일 여·야 합의로 제정되었습니다. 4·3 특별법에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위원회의 설치 규정과

희생자 명예회복은 국무총리 소관의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제주도지사 소관의 실무위원회에서 담당합니다. 진상 조사와 희생자 및 유족의 신원 확인도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93. 2007년 1월 24일 4.3특별법 일부 개정을 통해 희생자의 범위를 사망자, 행방불명자, 후유장애인 외에 형을 선고받은 수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유족의 범위도 희생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속·비속 외에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서 희생자의 제사를 지내거나 분묘를 관리하는 사실상의 생존자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정법에는 2008년 제주4.3평화재단 설립 지원, 사건 당시 집단묘지 조사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94.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을 신설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로금 등 특별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은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한 위원회에 국회 추천 4인을 포함해 9인으로 구성하는 추가진상규명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95. 2022년 1월 11일 4.3특별법 일부 개정으로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는 9천만 원,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수형인에게는 9천만 원 이하를 국가가 보상하도록 했습니다.

## 공식 사과

96. 2006년 4월 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는 처음으로 제58주년 제주 4.3 사건 추념식<sup>(th)</sup>에 참석해 국가권력 남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97. 2021년 4월 3일,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제73주년 제주 4.3사건 추념식<sup>(rd)</sup>에 참석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 보상

98. 4.3특별법 개정(2022년 4월 12일 시행)을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 중 최초로 희생자 배·보상이 법으로 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99. 지급 대상은 피해자와 그 유족으로, 민법상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보상 금액은 피해자 1인당 9천만 원 이하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는 9천만 원, 후유장애자와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는 3천만 원이 지급됩니다. 장해등급, 노동능력 상실률, 구금일수 등을 고려해 9천만 원 이하를 지급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6월 1일부터 2025년 5월 31일까지이며, 지급은 2022년 6월 1일부터 지급됩니다.

2026년 12월 31일. (2022년 예산: 1,810억 원(약 1억 3,750만 달러))

## 기념

100. 매년 4월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는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인권향상, 국민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국가추념식이 거행되고 있습니다. 4월 3일은

2014년 3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추념식은 목  
념, 현화, 분향, 기념사, 유족 수기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01. 2003년 10월 15일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가 승인되었습니다. 국내외 28개 기관 및 국가를 대상으로 자료조사를 실시하여 10,594건의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제주 4·3평화재단은 추가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추가 사실조사는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2012년 3월~2016년 12월, 2017년 7월~2018년 2월, 2019년 1월 - 2020년 12월.

## 10. 여수-순천 10-19 사건

### 법률

102. 2021년 7월 20일 여야 합의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수·순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특별법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와 전라남도 소속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이 법은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신원 확인에 관한 사항도 다루고 있습니다.

103. 지난 1월 21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조례'(이하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범위, 의료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04. 2023년 3월 15일, 여수·순천사건 특별법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을 연장(2022년 1월 21일~2023년 12월 31일)하고, 위원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했습니다.

### 공식 사과

105.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월 21일 제1차 위원회에 참석해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 보상

106. 여수·순천사건 특별법(2022년 1월 21일 시행)은 여수·순천사건 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 의료(치료비, 간병비, 장비비)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기념

107. 여수·순천 사건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해 매년 10월 19일에 합동 추념식이 열립니다. 이 기념식은 국민 화합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108. 제74주년 여수·순천 10·19사건 합동 추념식은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습니다.

- 시간 / 장소 2022년 10월 19일(수) 10:00 / 광양시민광장(전라남도 광양시)

- 참석 규모 : 약 500명(유족, 행정안전부장관, 전라남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등)
- 사용된 예산: 국비 1억 7천만 원 사용
- 하이라이트: 묵념, 헌화 및 분향, 추도사, 유족의 사연 낭독 등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09. 실무위원회는 2022년 1월 21일에 구성된 이후 1년 동안 6,800건의 사실 조사 보고서를 접수했습니다. 첫 조사 시작일(2022년 10월 6일)부터 2년간 조사를 진행하며, 이후 6개월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110. 신고인의 범위는 희생자, 그 유족, 희생자의 친족, 진실규명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향후 신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 규명조사보고서 작성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111. 여수·순천 사건으로 인해 지리산 인근 전라북도와 경상남도에서도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전라북도 남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2년 10월 6일). 여수·순천 사건과 관련된 남원 지역 주민들과의 면담, 현장 방문, 남원 관련 자료 수집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112. 여수·순천사건 관련 국내 자료와 국외 자료의 해설 및 번역, 구술자료 발굴·분석·기록, 여수·순천사건 진압부대 활동 연구, 희생자 유해 발굴 및 DNA 감식 등 진상규명을 위한 다양한 연구 사업을 의뢰했다.

## 11. 브라더스의 집(집단 숙박 시설)

### 법률

113. '내무부 훈령에 따른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 및 국가책임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2014년 7월 15일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다시 발의되었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2016년 7월 25일에 다시 폐기되었습니다.

114. 2018년 1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 및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가입 권고 결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는 2019년 4월 10일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115. 현재 형제복지원 사건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은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 공식 사과

116. 검찰총장(문무일)은 2018년 11월 27일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했습니다.

## 기소 및 처벌

117. 검찰은 1987년 형제복지원을 수사하여 원장을 특수감금 및 횡령 혐의로 기소했고, 횡령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결정되면,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가해자 등이 국가적 차원에서 규명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18. 진실화해위원회는 1년 8개월의 조사 끝에 2022년 8월 23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민간인을 부랑인으로 낙인찍어 장기간 자의적으로 구금한 상태에서 강제노역, 신체적 폭행, 성폭력, 실종 등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사건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조 또는 외면한 결과 발생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형제복지원에 감금되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국가가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또 국가가 입소자들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개선하고, 국회는 2021년 6월 21일 국무회의, 2022년 12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된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유엔 국제협약'의 비준에 조속히 동의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산시에 예산, 조례, 조직 체계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다.

119. 부산광역시는 형제의 집 피해자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관련 연구를 의뢰했습니다. 2018년 대검찰청 과거사 위원회는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을 조사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이 형제복지원 원장의 횡령액을 축소하거나 수사를 취하하라는 등의 불법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또한 검찰은 1975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인 '부랑인 신고, 통제, 수용, 보호, 귀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지침'이 위헌, 위법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12. 서산 개척단 (개척단)

### 법률

120. 서산개척단(개척단) 사건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나 법안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대한민국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사과

121.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5월 10일 서산 보도연맹 사건

---

의 진실을 확인하고,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고 명예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보상**

122. 피해자들의 증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서산 개척단에는 약 1,700여 명이 구금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확한 수감자 수를 추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해자를 확인할 수 있는 명부나 기타 자료가 없어 피해자 수를 추정할 수 없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개척단원)에 대한 보상과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기념

123. 서산개척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정영철)는 매년 서산개척단 설립일(11월 14일)에 시립희망묘지공원 내 무연총에서 '서산개척단 희생자 추모제'를 봉행하고 있다. 서산시는 1978년 시립희망묘지공원을 조성하고 연고자가 없는 희생자들을 무연총이라는 합동묘역에 안장했다.

## 기소 및 처벌

124. 서산 개척단 단장이 운영비를 횡령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결과 단원들은 충분한 식량도 없이 근무했습니다. 개척단장은 '구호팀'을 조직해 서산 개척단 정착지 주변을 초소로 둘러싸고 하루 종일 감시했습니다. 또한 개척단원들이 도주하다 붙잡히면 장교들이 폭행을 가했다. 개척단 단장과 감독관은 사망했고, 경찰관들은 행방이 묘연해 수사를 할 수 없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25. 피해자(신청인 287명)들은 2020년 12월 16일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는 관련 자료(국가기록물 356건) 조사 및 증언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126. 진실화해위원회는 2022년 5월 10일, 불법적인 국가권력이 강제 구금, 강제 노동, 폭행, 사망, 강제 결혼 등 피해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음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와 명예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또한 당시 버려진 염전이 경작지로 바뀌고, 서산개척단원과 정착촌 주민들의 지속적인 강제노동 투입으로 지가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했다. 위원회는 신청인별 참여 정도 등을 고려해 '자립지도사업을 위한 임시조치법(법률 제2039호) 제6조(토지의 분배)의 취지에 따라 보상 및 특별법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 13. 삼청 강제 수용소

### 법률

127.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삼청교육대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진실·화

---

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는 사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보상**

128. 피해자가 삼청교육대 수용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

위원회의 심의 및 의사 결정 절차(2004~2015년)를 통해 제공되었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29. 국방부는 자체적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삼청수용소가 불법이며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삼청수용소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사실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을 규명했습니다.

## 14. 긴급 조치

### 법률

130. 2013년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제9호에 대해 위헌을 선고했습니다.

131. 진실화해위원회는 1,050명이 재심 대상자임을 확인했고, 2021년 7월 대검찰청은 이 중 864명에 대한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864명 중 218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처리했고, 나머지 피해자들은 형사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직접 재심을 청구해야 했습니다.

### 보상

132. 진실화해위원회 1차 조사(2005~2010년)에 따르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처벌받은 피해자는 약 1,140명에 달합니다.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 배-보상을 받은 피해자의 경우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원이 긴급조치가 통치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거나 소멸시효를 이유로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33.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412건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을 분석하여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12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재심 현황 자료를 발간하여 인권 회복과 피해자들이 직면한 과제, 피해 구제의 경과와 성과, 한계, 각 사건에 대한 결정 및 재심 현황 등을 수록했습니다.

## 15. 골령골 민간인 학살 (한국전쟁 희생자)

### 법률



134. 대전 골령골 사건과 관련하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했습니다. 2020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94건의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 공식 사과

135. 2008년 1월 24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울산보도연맹 학살사건' 희생자 추모식에 영상 메시지를 보내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으로 희생되거나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136. 2010년 10월 27일 조현오 당시 청장은 '충남보도연맹 학살 희생자 위령제 및 진실규명 위령제'에서 "비록 전쟁 중이었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 권력에 의해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불행한 역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사과했다.

## 보상

137. 제1차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이 확인된 희생자 유족들은 개별적으로 또는 유족회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해자는 8천만 원, 배우자는 4천만 원, 부모와 자녀는 8백만 원, 형제자매는 4백만 원의 배상금을 받았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유족들이 배-보상금을 받기까지 2년여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피해자에 대한 포괄적인 배-보상법 입법을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2022년 7월 현재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없애고 포괄적 배-보상을 실시하는 내용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기념

138. '대전 골령골 민간인 학살 희생자 합동위령제'는 매년 6월 27일 골령골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한국전쟁 전후 학살된 희생자 유족을 위로하고 과거의 상처 치유와 극복을 통한 화해에 기여하기 위해 2016년 골령골 학살터에 국가 차원의 화해-추모시설(산내평화공원)을 건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사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보훈처는 시설 건립에 앞서 현재 골령골 유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 기소 및 처벌

139.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보고서에 가해자들의 소속, 직위, 직책이 밝혀졌지만, 이름은 익명으로 남아있었습니다. 현행법상 가해자들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고, 대부분 이미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학살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학살과 같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등 제도적 개혁을 권고했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40. 2010년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골령골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여 사건의 경위, 희생 과정, 학살 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성, 희생 이유, 가해자 및 지휘 명령 체계, 위법성, 유족 피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

국가가 국민 화해와 통합,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적절한 법적, 제도적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141. 2020년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미처 사실조사 신청을 하지 못한 많은 유족들의 사건이 심사 중입니다(94건 신청).

142.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희생자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학살 명령의 구체적 내용, 가해자의 지휘명령 체계 등 제1기 진실화해위원회가 밝히지 못한 진실을 추가로 규명해 나갈 것입니다.

## 16. 선감 아카데미

### 법률

143. 2018년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2019년 9월 19일에는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현재 이 사건만을 다루는 별도의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해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상

144. 경기도는 도내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실'이라는 회복·치유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기념

145. 선감학원 피해 지원 및 추모위원회는 선감학원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은 날인 9월 30일에 매년 추모 행사를 개최합니다.

### 기소 및 처벌

146.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선감학원 사건의 진실이 확인되면 가해자를 포함한 선감학원 내 인권침해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되고 밝혀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47.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1년 5월 조사를 시작해 현재 피해자 증언과 관계부처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정권 당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의 법적 쟁점, 단속 과정에서 적용된 공권력의 구

조적 원인과 관행, 학원 운영 실태 등이 조사 대상입니다.

148. 경기도는 2020년 성남학부모피해신고센터를 설립하고 이 사건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습니다.

## 17. 강제 징병 및 녹화 프로젝트

### 법률

14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사실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식 사과

150. 국방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대국민 사과를 포함한 권고 이행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 보상

151. 현재 피해자들은 개별적으로 국가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보상을 받고 있습니다.

###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

152. 국방부는 2007년에 자체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하고 진실 규명을 진행했습니다. '강제징용 및 녹화사업 진실규명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차원에서 불법 행위가 자행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추가 정보 1: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생존자 및 관련 목격자의 구술 진술 및 역사 기록

153. 피해자 증언 등 1차 사료의 생산과 수집을 촉진하고 정부가 객관적 증거 자료를 관리·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마련됐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문제는 생존자 수가 급감하고 일본의 과거 산업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등 역사 왜곡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현안 대응에 나서고 있다. 강제동원 생존자 수가 줄어들고 있어 증언 확보가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154. 정부는 2022년 6월 현재 74명의 증언 녹취를 완료했으며, 올해 안에 70명을 추가로 인터뷰할 예정이다. 2021년부터는 일본 사도광산 강제동원 피해자와 생존자의 구술 진술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기간	인터뷰 대상자	기록된 시간
1단계	2020년 9월 - 2021년 6월	생존자 24명	45
2단계	2021년 7월 - 2022년 7월	생존자 및 목격자 50명 등	70
3단계	2022년 5월 - 12월	생존자, 목격자 등 70명	120

155. 이 기록물은 전시회와 보도자료에 활용되었습니다. '강제동원 증언 전시회'는 올해 7월부터 대한민국 일제강점기 역사박물관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역사의 유산 전시'는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국립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기념관에서 외교부와 공동 주최하고 있습니다. '조선인, 일본 광부가 되다' 특별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국립일제강제동원기념관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156. 정부는 4단계 구술 진술 및 역사 기록 작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존자, 유족, 가해자, 목격자, 연구자 등 관련자 100명을 대상으로 150시간에 걸쳐 인터뷰와 녹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술 진술과 역사 기록은 출판, 콘텐츠 사업, 아카이브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 추가 정보 2: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봉환

157. 봉환은 정부 간 협의를 통해 대일항쟁기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의 유해를 국내로 송환함으로써 희생자와 유가족의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고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158. 러시아 사할린 지역의 유해를 봉환하여 국내 묘지를 확인했습니다. 총 7차례의 봉환

을 통해 85구(2013년 1구, 2014년 18구, 2015년 13구, 2016년 11구, 2017년 12구, 2018년 16구, 2019년 14구)의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96개 공동묘지에 있는 1만 5,539기의 무덤이 확인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사할린 강제동원 희생자 유해 16구를 봉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봉환은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정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환이 확정되면, 유골 봉환에 앞서



유해발굴 해외합동추모식과 국내 유가족 및 정부 주요 인사들을 위한 추모식 및 안장식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159.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키리바시공화국 타라와 지역에 강제 동원된 희생자 시신 1구가 확인되었습니다. 키리바시공화국과 대한민국 정부는 시신 송환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2019년 12월 10일). 그러나 코로나19와 키리바시공화국의 지역 봉쇄 조치로 인해 논의를 지속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시신 송환은 키리바시공화국의 현지 봉쇄령이 해제되는 시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국가 및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160. 송환이 확정되면 해외 추모식, 귀국식(인천국제공항), 국내 추모식(전남 영광 지역)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추가 정보 3: 국가 폭력 트라우마 치유 센터 설립**

161. 진실화해위원회는 집단 희생, 인권 침해 등 사건 피해자와 유족의 정신적·육체적 고통과 후유증에 대한 의료·상담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162.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2017년부터 추진되고 있습니다.

163. 양향자 국회의원은 2020년 9월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 설립 및 운영법'이 2022년 6월 8일 시행되었습니다. 센터 건립은 2023년 12월에 완공될 예정입니다.